

제 315 호

1972. 11. 16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 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  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75-6444. 6090

# 시 보

## 차 례

### ◎ 공 고

제 254 호	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운영 요강 제정	.....	3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제 255 호	7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집행 요령	.....	8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

◎ 사 령	.....	8
-------	-------	---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## 공 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운용요강을 별첨과 같이 제정 공고한다.

## 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4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

재정 자금 운용요강 제정

1972. 11. 14.

서울특별시장

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운용요강

제 1 조 ( 목적 ) 이 요강은 서울특별시 재정 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(이하 자금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재원 ) 이 요강에 의한 지원 재원은 서울특별시 재정 자금에 의한 대하금과 그 회수자금을 재원으로 한다.

제 3 조 ( 용자대상 및 집행절차 ) ①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 등록을 펼하고.

②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하되,

③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생산자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(업종분류) 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 생산자는 협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용자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④ 광업 운송업 및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요강에 의한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⑤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집행 요령은 별도 공고로 정한다.

제 4 조 ( 자금의 구분 ) 이 요강에 의한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한다.

제 5 조 ( 용자조건 ) 이 자금의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.

## (1) 시설자금

1. 대출한도 20,000,000 원 이내

2. 금리 연리 10%

3. 융자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융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부 재정 자금에 의한 시설자금의 예에 준한다.

## (2) 운전자금

1. 대출한도 10,000,000 원 이내

2. 금리 연리 15.5%

3. 융자기간 단기 : 1년 이내  
중장기 : 3년 이내로

하되 응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부재정자금에 의한 운전자금의 예에 준한다.

제 6 조 (대상업체의 선정) ① 서울특별시장은 (이하 시장이라 한다) 자금의 사정을 참작하여 응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금의 지원한도를 결정한 후 이를 대출기관에 통보한다.  
 ② 시장은 응자대상업체의 수용포기 수용태세 불비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적격업체 중에서 응자대상후보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자금대출) ① 자금의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은행 (이하 은행이라 한다) 으로 한다.

② 은행장은 시장이 선정 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최단시일 내에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.

③ 대출결자는 은행의 칭하는 바에 의하되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한다.

제 8 조 (자금의 대하) ① 시장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 대하한다.  
 ② 대하금리는 다음과 같다.

1. 시설자금 년리 8%

2. 운전자금 년리 12%

③ 대하기간은 대하할 때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시장이 자금을 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장에게 대하의 뜻을 통보하고 이에 의하여 은행장은 별지 1호서식의

자금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은 신청서에 의거 자금을 지출한 후 별지 2호서식의 "자금대출금 차용증서"를 교부받는다.

⑤ 대하된 자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은 은행이 부담한다.  
 ⑥ 기타 대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 조 (자금의 회전대출) 대출에 의하여 회수된 자금은 대하기간내에 한하여 그 자금의 범위내에서 회전 대출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보고) 은행장은 매월 자금운용상황 보고서를 每月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변경의 승인) 자금대출업체가 그 업체의 명의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내용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은행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2 조 (사후관리) ① 시장 및 은행장은 자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때는 수용업체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 및 서류 기타 보고서를 청구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정부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의 예에 의한 사후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기업가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부설업체에 대한 조치) ① 응자 신청업체가 신청내용과 사실이 상

이하거나 사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중지한다.

(2) 기대 출된 업체가 전 1 항의 사실이 있거나 신청시의 계회사 항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대출 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당초에 소급하여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.

(3) 대출업체가 전 제 11 조의 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제 12 조 제 1 항의 사항에 정당한 자유없이 불응할 때에는 자금의 회수는 물론 차후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자금대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 14 조 (기타사항) 본 업무수행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이 요강에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정부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의 예와 이 사업목적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은행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운영한다.

## 부 칙

1. 이 요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
2. 이 요강 시행이전에 기히 대하 대출된 자금은 이 요강에 의하여 대하 대출된 것으로 본다.
3. 이 요강 시행 이전에 시달한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자금 운용요강은 이를 폐지한다.

## 〔제 1 호서식〕

## 재정자금 대하신청서

## 1. 대하신청금액

일 금

원정

## 2. 대하조건

- 가. 대하기간
- 나. 대하금리
- 다. 대출금리
- 라. 자금용도
- 마. 이자지불방법
- 바. 대출방법
- 사. 기타

이상과 같이 19 년도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자금 원정을 용자금으로 대출코자 신청하오니 대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 년 월 일

신청자 중소기업은행장

⑧

서울특별시장 귀하

118

8-6 제 315 호

시 보

1972.11.16.

[제 2 호서식]

재정자금 대하금차용증서

1. 대하금액

일금 원정

2. 자금구분

3. 대하기간

4. 이자율 대하금리 년 분

대출금리 년 분

5. 상환조건

6. 기타

위 금액을 그 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에서 차용  
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화약함  
니다.

19 년 월 일

차용인 중소기업은행장

(인)

서울특별시장귀하

[ 제 3 호 서식 ]

## 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

가. 자금집행상황

서울특별시장 귀하 ( 월분 )

중소기업은행장 ⑨

자금별 대출 및 회수	대 출				회 수			
	대출액	미대출액	계	미대출액에대한 조치사항	회수액	미회수액	계	미회수액에대한 조치사항
시설자금								
운전자금								
계								

나. 업체별 대출 및 회수사항

서울특별시장 귀하 ( 월분 )

중소기업은행장 ⑨

업체명	대표자	업종	자금 구분	용자 결정액	은행 승인액	전월말 잔액	월 총 대출 및 회수				금월말 잔액	상환 예정일	비고			
							대 출		회 수							
							일자	금액	일자	금액						

## 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5 호

7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 집행 요령  
 7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 집행요령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 운용요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2.11.14.

서울특별시장

## 1. 재원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 자금, 회수자금 및 신규대하 예정자금

## 2. 지원 대상

가.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중

나.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한다.  
 다만,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 생산자 및 동법 시행령 제4조(업종분류)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 생산자는 협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.

다. 광업, 운송업 및 상업 기타 써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.

## 3. 자금의 용도

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
## 4. 지원 내용

## 가. 운전자금

지원한도 : 5,000,000 원 이내  
 금리 : 년 15.5 %  
 융자기간 : 3년 (6개월거치 2년 6개월 분할 상환)

## 나. 시설자금

지원한도 : 6,000,000 원 이내  
 금리 : 년 10 %  
 융자기간 : 5년 (1년거치 4년 반기별 분할 상환)

## 5. 신청 서류

신청서 (산업국 공업파에서 배부)  
 및 관계 증빙서류 1부。

## 6. 신청 기간

72. 11. 15 - 72. 11. 27 까지

## 7. 신청할 곳

당시 시민파

## 8. 지원대상 결정

실태조사와 서울특별시 재정 자금 융자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중소기업은행장 및 당해 업체에 통보한다.

## 9. 기타 상세한 것은 산업국 공업파 (75-184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사령

◎ 1972. 11. 16.

남부병원 고용원 (운전원) 김성실  
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

서울특별시장